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 관리계획

2023. 12. 21

천 우 전 문 요 양 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설치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천우전문요양원(이하‘시설’이라 함)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적용범위) 시설에서 설치 운용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정의) 이 계획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 · 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Circuit Television)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 당해 화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 정보를 입력 · 저장 · 편집 · 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수집을 제외한 화상 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4조(기본방침) 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 시설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①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이하 ‘책임자’라 한다.)에게 책임자의 역할 일체를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설치 · 운영 관리책임자

책임자	운영 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신현미 원장	이연희 사무국장	이연희 사무국장 이지화 복지요양팀장 2층 및 3층 사회복지사 간호팀장

-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시설 CCTV는 총 51대를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 침실 32대(침실 각 1대)
- 공용공간 19대(공동거실 2, 프로그램실 4, 물리치료실 1, 식당 1, 복도 8, 승강기 1, 현관내부 1, 외부공간(현관 주출입구))

구분	계 51대	현 황			
		침실	복도등 공용	외부	위 치
1층	5		4	1	현관1대, 물리치료실1대, 식당1대, 승강기1대, 건물출입구1대
2층	23	16	7		공동거실1대, 프로그램실2대, 복도4대
3층	23	16	7		공동거실1대, 프로그램실2대, 복도4대

-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이 안내판을 시설 출입구 및 게시판에 설치한다.
- 다음 각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 CCTV운영 모니터(원장실)
 - 디지털 녹화기(원장실)
 - 그 밖의 부대 장치(원장실)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 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1,024), 초당 10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원장실에 있는 DVR/N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원장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 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1.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 주체에게 열람 ·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과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 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 결정 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10호 서식에 따라 영상정보 이용·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열람 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⑦ 청구인이 영상정보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모든 정보주체의 개인 식별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모자이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화상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 조치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 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 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 정보 접근 권한은 시설운영 담당자로 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 정보의 보관 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 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 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 · 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 운영 · 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 · 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 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관리계획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동의서

-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보호자 연락처: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 3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서

신고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기요양기관명	
	주 소			
신고내용	신고내용	<p>-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 ※ 일부장소 미설치 시 미설치 장소 명확하게 표기</p> <p>- 미설치(미운영) 기간: 20 . . . ~ 20 . . . 까지</p>		
	동의자 현황	<p>- 수급자 수: 명</p> <p>- 동의자 수: 명</p> <p>• 수급자 수: 명</p> <p>• 보호자 수: 명</p>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하기로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 받았기에 불임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이름
성명
성명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 4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필증				
신고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기요양기관명	
	주 소			
신고내용	신고내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 ※ 일부장소 미설치 시 미설치 장소 명확하게 표기 - 미설치(미운영) 기간: 20 . . . ~ 20 . . . 까지		
	동의자 현황	- 수급자 수: 명 - 동의자 수: 명 • 수급자 수: 명 • 보호자 수: 명		
<p>「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미설치(미운영)하기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경주시장 귀하</p>				

[별지 제 6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청구영상 기록기간	(예: 연도,월,일,시간 정확히 기록)		
	청구영상 설치장소	(예: 장기요양기관 내 장소 기입)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청구인이 영상정보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모든 정보주체의 개인 식별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모자이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동의 ☐ 미동의)		
<p>「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right;"> 청구인: _____ (서명 또는 인) </p> <p style="text-align: right;">천우전문요양원장 귀하</p>				

[별지 제 7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제한 [] 제공 등 기타)

수신자 :

주 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 월 일(오후 ~ 오후)	열람 장소	
통지내용			
열람방법	직접방문을 통한 열람·시청		
사 유			
이의제기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 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천우전문요양원장

[별지 제 8호 서식]

정 정 · 삭 제 청 구 서

처 리 기 간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 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 일 명 칭		열 람 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 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div>「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 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청구인 (서명 또는 인)</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font-weight: bold;">천우전문요양원장 귀하</div>				

[별지 제 9호 서식]

번 호		정 정 (삭 제)조 치 결 과 통 지 서			
제 호					
① 수 신	_____ 귀하 (주소 : _____)				
② 개 인 정 보 파 일 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정 정 (삭 제) 결정 및 거부내용					
⑤ 정정(삭제) 거부사유 ※ 거부시만 작성					
⑥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p>1.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p> <p>2. 정정 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청구하실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천우전문요양원장</p>					

작성요령

○ 구분: 이용/열람/제공 중 1개에 √ 표시

- 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 열람: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열람권한을 가진 자가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화된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아닌 보호자에게 주는 경우
- ※ 법 제33조의3에서 정한 영상정보의 이용·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사본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

○ 일시: 이용·열람·제공 일시 기재('23. 6. 30. 15:00 등).

○ 요청자: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예시) 00경찰서 00계 직급 ~~계장~~ 홍길동 02-123-4567

○ 이용목적/사유: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노인학대, 안전사고 확인, 범죄수사 등)

○ 이용·열람·제공하는 근거: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별지 제 11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파일 삭제·파기 관리대장**

번호	파일명	파일생성일	파일 내용	삭제·파기 사유	파기일	파기담당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 12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 운영(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 관리대장

23.12.23~24.03.

[illegible]

[별지 제 13호 서식]

C C T V 설 치 안 내	
목 적	어르신 안전, 요양시설 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 치 장 소 [촬 영 범 위]	현관내.외부(2) 승강기(1) 물리치료실(1) 식당/회의실(1) 침실(32) 공동거실(2) 복도(8) 프로그램실(4)
책 임 자	책임자 : 시설장 운영자 : 사무국장 연락처 : 054-744-4901 위탁업체 : S.K실드스(주) ☎1588-6400

210mm

297mm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1층 . 2층 . 3층 CCTV 카메라 아래]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실 촬영 동의서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침실 촬영에 대한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서명	
					수급자	보호자
이동순	1935.09.01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동의방법 : 전화통화() 대면()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천우전문요양원(14713000003)

○ 동의 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까지

※ 입소하여 생활 중 동의(반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보호자 연락처 :

천우전문요양원 원장 귀하